

※ 본 안내문은 오픈 전 참고용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

구분	내용				
신청자격	※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-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※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. ※ 2023.11.1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-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				
청약통장 가입요건	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				
당첨자 선정방법	구분	내용			
	선정방법	해당지역(청주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			
	경쟁시 우선순위	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			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	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	기준	점수	
	계	100			
	미성년 자녀 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	미성년 자녀 3명	30	
	영유아 자녀 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	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한부모 가족			5		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생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생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기간산정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	
해당 사도 거주 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생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생년으로 봄)으로서 해당 지역에(충청북도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•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